

會社再建會計에 대한 考察

— 減資會計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Accounting the Company
— A Reduction on Capital Stock Approach —

裴 青 鴻*

A corporation that consistently suffers net loss accumulates negative retained earnings, or a deficit.

These corporation were finally bankruptcy.

The bankruptcy of corporation was not a desirable in the view of investors, creditors and other user.

Therefore, the reconstruction of the deficit corporation was desirous.

The reconstruction method of the deficit corporation was variety.

This paper focus on the reduction on capital stock in order to reconstruct the deficit corporation.

1. 序 論

會社의 계속(continuation)이란 解散 후 清算節次中에 있는 會社가 人格의 同一性을 維持하면서 解散前의 會社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會社의 解散事由 중에 會社의 破産·解散命令 또는 解散判決 등과 같이 會社의 存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이면 會社를 解散前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商法은 각 종의 會社에 對하여 會社의 계속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¹⁾

會社의 계속의 時期에 關하여 會社가 株主에게 残餘財產의 分配를 한 후에는 會社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²⁾ 企業維持의 憲義에서 보아 會社계속의 時期를 가급적이면 장기간으로 認定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도 實質

上 폐해가 없으므로 會社의 清算節次를 종료하여 清算中の 會社가 소멸할 때까지는 會社의 계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企業의 계속은 商法의 最高理念中의 하나인 企業의 維持強化의 側面에서나, 會計公準의 하나인 계속기업의 公準이라는 側面에 아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財政上 어려움에 처해 있는 會社를 再建시켜서 會社를 계속시키고자 하는데 그 研究의 目的을 두고 있다. 會社를 再建하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減資會計를 中心으로 論理를 展開했으며, 나머지 方法들은 概念程度만을 언급했으며 會社再建에 대한 歷史的인 側面도 간단하게 언급했다.

2. 會社再建에 關한 理論的 背景

2·1 會社再建會計의 憲義

會社再建會計라는 것은 會社가 財政上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새로운 出發을 하기 위한 會社再建上的 會計節次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財務會計는 繼續企業을前提로 해서,

* 제명설 업전문대, 경영학과 강사

1) 裴鐵世·姜渭斗, 商法講義〔II〕(서울: 豊雪出版社, 1982), p. 79.

2) 大隅健一郎, 全訂會社法論(上)(東京: 有斐閣, 1954), p. 102.

經營活動에 따라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去來의 價值를, 測定·記錄해서, 外部의 利害關係者에게 財務에 관한 情報를 報告하기 위한 會計節次이다. 會社再建會計도 동일한 모양으로 전체적인 價值를, 測定·記錄해서 外部利害關係者에게 財務에 관한 情報를 報告하려는 目的을 가진다는 點에서는 財務會計의 分野에 屬한다.

그런데도, 일단 財政上 어려움에 처한 會社는 반드시 再建되어서 經營을 繼續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和議, 會社整理 等을 申請할 경우에도, 나중에 破産 또는 清算에 移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 會社는 繼續企業만을前提로 할 것이 아니라 閉鎖企業을 또한前提해서考慮할必要가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會社가 財政上 困難하게 되었을 때, 즉 破産이나 再建이나의 岐路에 서게 되었을 때, 企業會計도 繼續企業과 閉鎖企業의 雙方의立場에서 그것을考察할必要가 생기게 된다. 이 점에서, 繼續企業만을前提로하는 財務會計와는 다르게 된다. 그러나 會社再建會計는 어디까지나, 企業의 繼續을目標로 해서 再建을 꾀하는 會社를 對象으로하는 會計節次이고, 閉鎖企業을前提로 하는 清算, 破産等의 거래가 財務會計上의 處理節次를 원용하고 있다는點에서, 會社再建會計는, 財務會計에 있어서 特殊한 하나의 會計部門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³⁾

따라서 會社再建會計는, 廣意의 財務會計에 있어株式會社 特殊會計에 屬한다는 概念을前提하기도 한다.

2.2 會社再建의 方法

株式會社가 財政上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會社의經營을 계속해서 再建을 할 생각으로, 새로운 出發을 하기 위해서는 裁判外의 節次와 裁判上의 節次가 있다.

裁判外의 節次에 私的 再建과 合併·分割 등이 있고, 裁判上의 節次에는 和議法上의 和議, 會社整理 節次法上의 會社整理 節次가 있다.

그리고 會社가 再建에 失敗해서, 會社를 解散해서閉鎖하는 경우에는, 清算 및 破産等의 節次가 있다.

會社가 財政上 困難을 당한 경우에 우선 해야 할再建方法은 私的 再建이다.⁴⁾

私的 再建은 裁判上 또는 法律上의 節次는 아니고, 會社內部에서任意의으로 實施할 수 있기 때문에 가

3) 片岡泰彦, 會社再建會計(東京:中央經濟社, 1983), pp. 1 ~ 2.

4) 上揭書, p. 2.

장간단하고 費用도 적은 再建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法은 強制力이 전혀 없기 때문에 經營者는 株主나 많은 債權者들과 協力體制를 만들必要가 있다.

合併의 경우에, 被合併會社는 法律上 消滅하기 때문에 會社의 閉鎖에 屬한다는 思考方式도 있지만, 被合併會社의 資產·負債·從業員 等은 新設會社 또는 合併會社로 移轉되어, 新會社에서 새로운 出發을始作한다는 思考方式에 根據를 두어 會社再建中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合併에는 法律上의 合併과 法律外의 合併이 있고, 法律上의 合併에는 吸收合併과 新設合併이 있다. 法律外의 合併에는 소위 買收合併이라는 것이 있다.

分割은 會社의 不振部門을 分割하는 데 따라 會社再建의 效果를發揮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分割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立法化되어 있지 않다. 分割을 規定하고 있는 것은 1966年の 프랑스 會社法 程度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現物出資나 營業讓度 등의 規定을 準用할 수밖에 없다. 단 課稅上의 問題가 있는데, 상당한 效果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現實이다.

裁判上의 再建方法으로서는 和議를 우선 할 수 있다. 和議法上의 和議는 債權者集會에서 多數決의 原則에 따라 一部 強力한 債權者를 抑制하고 債務의 一部免除 또는 債務의 支拂猶豫를 實現한다고 하는 效果를 가진다.

그러나 이 節次는, 内部整理에 관한 規定이 충분히 없고 破産原因이 發生해서 和議를開始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抵當權者가 그 權利를行使해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節次라고는 할 수 없다.

會社整理法上의 會社整理한 財政의 會社를 更生시키는 制度로써 매우 유용한 制度이며, 이것이 의하여 會社의 債權者, 株主 기타의 利害關係人의 利害를 조정하고 그 事業의 整理再建을 꾀할 수 있는 것인 바(會整 1條)⁵⁾ 이는 美國聯邦破産法 第 10 章(Bankruptcy Act, Chapter X)의 再組織制度(Corporate Reorganization)를 채용한 日本의 會社更生法을 繼受하여 單行法으로 제정한 것으로 하나의 特別法이다.⁶⁾

會社整理節次는 會社債務의 猶豫, 債務의 減免, 利害關係人의 權利變更 등 強力한 司法的 救濟手段에 의하여 企業의 整理·再建을 꾀하는 것이므로 法院

5) 정희철, 商法學原論(上)(서울:博英社, 1982), p. 532.

6) 李範燦, 商法講義(서울:國民書館, 1981), p. 206.

이 監督者로서 이 節次에 관여한다.

法院은 會社整理節次의 開始決定과 동시에 管理人을 選任한다. 管理人은 整理計劃의 逐行者로서 會社財產의 管理・處分權 뿐만 아니라, 會社事業의 經營權도 行사하게 된다. 따라서 整理計劃의 成功의 인遂行 여부는 管理人의 能力 如何에 좌우된다.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같은 利害關係人으로서 關係人集會에 출석하여 會社整理節次의 成敗를 좌우하는 整理計劃을 議決하며, 이 決議에 따라 會社再建을 위한 損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의 減縮을 감수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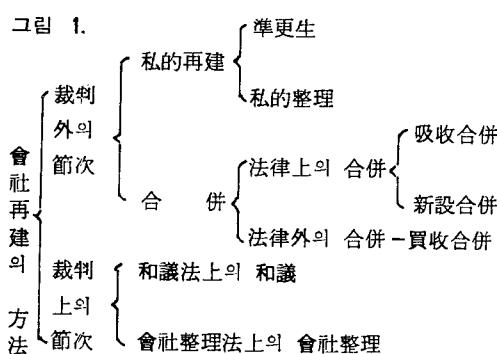
清算이라는 것은 會社가 解散후 그 財產關係를 원만히 끝맺고 會社의 法人格을 소멸시키는 節次를 말한다.

清算에는 任意清算과 法定清算의 두 가지가 있고, 株式會社의 清算에는 任意清算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法定清算의 엄격한 節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⁸⁾ 특히 株式會社에 破産原因이 있을 때는 特別清算에 의하고 있다. 特別清算의 特徵은 法院이 特別한 強制處分을 할 수 있고, 債權者集會의 多數決에 의한 協定이 認定되어지고 있다.⁹⁾

破産法에 있어서 破産은 會社가 再建에 失敗하고 財政上 破綻에 빠진 경우, 그 總財產을 債權者에게 公平하게 配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裁判上의 節次이다.

또한 最近에는 企業이 經營上 困難하게 되었을 때, 破産・清算・和議・會社整理 등을 신청한 경우를 倒産 또는 倒産企業이라고 부르는 慣習이一般的이다. 특히 法律學이나 經營學 分野에서 盛行하고 있다.

以上에서 論述한 것의 關係를 그림 1과 그림 2에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¹⁰⁾



7) 上揭書, pp. 206 ~ 207.

8) 徐燉珪, 商法講義(上)(서울:法文社, 1981), p. 457.

9) 趙相元, 法典(서울:玄岩社, 1984), pp. 1171 ~ 1196.

10) 片岡泰彦, 前揭書, pp. 4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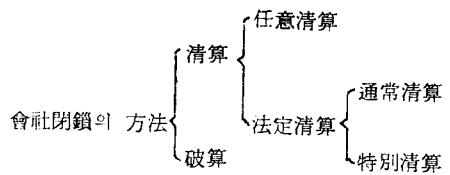


그림 2.

區 分	開始條件	再建方法(또는 會社閉鎖方法)	合計
私的再建	法律上의 條件은 없다. 財政上 困難에 처했을 때 任意로 행해 진다.	法律上의 規定은 없지만, 株主의 私財提供減資・增資・債務免除 등에 의한다.	再
合併	會社間의 契約에 의해 행해지지만 商法의 特別規定에 따라야 함.	吸收合併・新設合併 그리고 買收合併이 있다.	建
分割	法律上의 條件은 없고, 會社가 任意로 행한다.	法律上의 規定이 없기 때문에 現物 出資나 營業양도 등에 의한다.	會計
和議	破産原因이 있을 때	債務의 一部免除, 債務의 支拂 유예・減資・增資 등에 의한다.	倒産
會社整理	① 債務解消 때문에 事業의 계속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때 ② 破産의 原인이 되는 事實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債務의 一部免除과 一部支拂, 減資・增資・社會債의 發行, 合併 第二會社設立 등에 의한다.	
清算	任意清算이 있을 때 通常清算 法清算	會社의 解散이 있을 때 同上 裁判上의 清算	閉會

定 清 算 會 算 清 算	特別 清算	① 清算의 수행에 현 저한 지장 을 초래할 사정이 있 을 때	債權者集會의 協定에 의해 法院이 強制處 分을 行하는 清算節次	會 計	會 計
		② 債務초과 의 염려가 있을 때			
破 產		① 支拂不能 ② 支拂停止 ③ 債務超過	總財產을 모든 債務者에게 公 平하게 변제하 는 節次		

2.3 破産制度에서 再建制度까지의 歷史¹¹⁾.

영어의 Bankruptcy(破産)이라는 말은 그語原을 이탈리아의 bancarotta [banca(銀行)+rotta(破壊)]에서 찾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bancarotta는 中世 이탈리아에서 支拂不能에 빠진 金融業者の銀行을 怒한 債權者가 破壞한 것에서부터 왔다고 말해진다.

1673년의 불란서 商業條例에는, 破産에 관한 條例가 規定되어 있는데 그것은 詐欺破産者에 대한 罰則規定이며 債權保護思想에根據를 둔 것이다.

그후 1807년의 商法典 第二編에 破産을 規定하고 懲戒主義·商人破産主義를 採用했다. 따라서, 債務者는 破産에 따라 催務의 免責을 받지 못하고 (非免責主義) 債務는 全額을返済할 때까지 一生동안 갚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非商人에 대해서는 破産法이 適用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한편 獨逸破産法은, 一般破産主義를 採用했기 때문에 商人뿐만 아니라, 一般人도 破産法의 適用을 받는다. 懲戒主義의 採用은 大陸法의 特徵이었다.

破産制度에서 免責主義를 導入한 것은 英國이 最初였다. 英國에 있어서 最初의 破産規定은, 1542年 Henry 8世 時代에서 1571年 에리자베스 1世 時代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規定은 大陸法과 同一한 懲戒主義에根據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大法官과 다른 高官들은 詐欺破産者의 財產을沒收해서 그 財產을 債權者들에게 分配하는 權限을 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破産者는, 이것에 따라 債務를 免除받지 못하였다.

破産規定中에 債務者 救濟의 規定이最初로 設定된 것은 1705년이었다.

그 이후 英國의 破産法에는 免責主義가 採用되어서, 支拂不能에 따른 債務者의 財產을 債權者들에게公平하게 分配해서 正直한 債務者를 債權者들에게서解放시켜, 새로운 出發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했다.

즉 英國破産法은 大陸破産法에는 없는 債務者救濟制度를 發展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免責主義精神을 이어받아 더욱 強力한 再建制度로 까지 發展시킨 것은 美國이었다. 美國은 債務者救濟法의體系를 確立하였다.

美國에 있어서는 1800年 初에 破産法이 制定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商人에게 適用되었고 3年후에 廢止되었다.

그후 美國破産法은 몇 차례 改正되었다. 1867年의 3번째 破産法에 和議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었지만 活用되지 못하고 그대로 1878年に 廢止되었다.

美國에 있어서는 支拂不能에 빠진 會社가 再建하는 方法으로서는, 判例法上 發展된 衡平法上의 리시버쉽(equity receivership)制度였다.

그러나, 1929年 월가에서 始作된 大恐慌은 全國적으로 번졌고, 成長發展했던 企業은 크나큰 危機에 直面했다. 大企業은 리시버쉽 節次에 따라 再建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中小企業은 그 節次를 利用하기가 困難하였다. 會社는 特히 強力한 再建의 위한 法律을 要求하였다.

이윽고 1983年, 破産과 再建의 쌍방을 目的으로 한 聯邦破産法이 制定되었다. 破産法 第10章에 會社再建을 위한 會社更生法(corporate reorganization law)이 規定되었다. 진실로 美國聯邦破産者法의一部로서, 會社再建의 法規가 確立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8年 이 聯邦破産法은 改正되어서, 會社更生法은 聯邦破産法 第11章으로서 한층 充實하게 되어졌다.¹²⁾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 23年(1890)에 舊商法 第3編 破産編으로서 制定된 것이, 破産法의 始初였다. 이것은, 不란서法을 母法으로 해서 商人破産主義·懲戒主義를 採用한 法律이었고 現在에는 「舊破産法」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후 商法·民法이 獨逸法을 母法으로 해서 現行破産法이 公布되고, 同時に 債務者救濟를 目的으로 1914年 오스트리아法을 參照해서 成立한 和議法과 함께 大正 12年(1923)부터 施行되었다. 同破産法은, 獨逸法을 모법으로 했기 때문에, 一般破産法主義·懲戒主義思想을 採用한 것이다.

이윽고 二次大戰后에는 英美法의 影響을 強하게

11) 上揭書, pp. 5 ~ 8.

12) 上揭書, p. 7.

받아서 昭和 27年(1952)의 商法會社編의 改正, 會社更生法의 制定과 함께 破産法에 免責主義을 導入해서 大幅의in 改正이 實施되었다.

말하자면 破産節次 終了後에도 殘餘債務의 責任을 추궁하는 制度를 改正하여, 破産后에는 殘餘債務를 免除해 債務者는 更生해서 社會에서 活動을 할 수 있는 制度로 變化되었다.

한편, 昭和 13年(1938)5月, 舊商法中の「會社의 整理」規定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確產의 위협이 있다고 認定할 때, 裁判上의 節次에 따라 株式會社의 再建을 計劃하는 制度로서 美國의 리시버쉽制度를 모방한 것이다.

和議制度는, 破産의 原因이 現在에 存在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預防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이지만, 整理制度는 破産의一步직전의 상태에서 再建을開始한다고 하는 點에서는 和議制度와 比較해서, 一步前進한 強力한 規定이 있다.

그러나 이 會社整理規定에도 많은 결함이 있고 所期의 目的을 충분하게 達成할 수 없다.

그리하여 昭和 27年(1952)에 美國聯邦破産法 第10章의 再組織制度(corporate reorganization)를 母法으로 해서, 會社更生法이 制定되고 여기서 株式會社再建法이 完成을 보게 되었다.

以上에서 論述한 것처럼, 破産의 理念은 債權者保護의 思想에서 出發해서, 懲戒主義에서 免責主義로 移行하고 이윽고 破産法에서 再建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그리하여, 現代의 主要各國의 法律中에 會社再建의 思考方式이 導入되어져 있다. 예를들면, 프랑스 會社法에는 1967年的 大改正에 따라, 새로운 制度가 制定되고, 裁判上의 整理(reglement judiciaire) 등에 의해 會社의 再建이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獨逸에서는 破産法上의 強制和議와 和議法上의 和議節次가 會社再建을 위한 方法으로 採用되고 있다.

그리고 現行 英國의 會社法中에는 營業讓渡·債務整理·合併 등에 의한 會社再建(reconstruction)方法이 規定되어져 있다.¹³⁾

3. 減資會計

3.1 減資의 意義

減資라는 것은 一定한 方法을 통해서 企業의 資本金額을 減少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株式會社에 있어서 減資라는 것은, 増資와 反對로

13) 上揭書, p. 8.

14) 上揭書, p. 9.

會社의 發行株式資本總額을 減少시키는 것이다.¹⁴⁾

資本은 債務者保護를 위해서 最少한 保有하여야 할 財產의 基準額인 關係로, 이를 합부로 감소시켜서는 안된다.(資本不變의 原則). 그러나 사업의 축소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會社財產을 株主에게 반환할必要가 있다든지 또는 缺損이 누적되어 利益配當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缺損을 전보하여 장래 利益配當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 商法은 엄중한 節次를 거쳐 資本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資本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會社의 財產을 감소시켜 그 經濟的 基礎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株주의 持分을 감소시키므로, 資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株主利益을 위해 特別決議를 일어야 한다(商法第438條, 第434條)!¹⁵⁾

株式會社의 減資는 實質上의 減資와 形式上의 減資로 區分할 수 있다. 아직 減資의 法的 性質에 대해서 外國法上의 學說에서, 減資를 會社의一部解散이라고 解析하는 경우도 있지만, 減資에 따라 會社는 解散의 効果가 發生하지 않기 때문에 正當한 說明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컨대, 減資라는 것은 會社의 資本金額의 減少를 생기게 하는 特殊한 法律要件이라고 解析할 수 있다.

3.2 資本減少의 節次

會社의 資本減少는 다음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야 한다.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資本은 登記에 의하여 公示될 뿐이고(商法第317條 2항 2號) 定款變更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資本이 減少되면 그만큼 株주의 權利가 축소 내지 소멸되어 株주의 利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商法은 資本의 減少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다(商法第438條 1항 제434조). 다만 株金額 減少의 方法에 의한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定款變更을 하여야 하므로, 資本減少에 관한 特別決議에 定款變更의 特別決議를 하여야 한다.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에 있어서는 資本減少의 方法을 定하여야 한다(商法第439條 1항).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에서 資本減少의 方法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資本減少의 方法의 決定을 理事會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그 決議는 無效로 된다.¹⁶⁾

15) 李正浩, 現代會計理論(서울:經文社, 1984), p. 662.

16) 日本大審院 1925. 5. 27宣告, 「株主總會에서 資本減少의 결의를 할 때에는 동시에 그 方法을 決議하여야 하며, 그 決定을 理事會에 일임할 수 없다.

資本減少의 決議를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通知書와 公告에는 會議의 目的事項 외에 議案의 要領을 기재하여야 한다(商法 第 438 條 2 項, 第 363 條). 議案의 要領이란 實質上의 減資인가 名義上의 減資인가, 資本의 額을 減少할 것인가, 어떤 減資方法에 의할 것인가 등으로서, 이의 記載를 缺한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召集節次가 法令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決議取消의 原因이 된다.

(2) 債權者保護의 節次

實質上의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會社財產이 減少되고, 또한 名義上의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不可能한 利益配當이 가능하게 되어 會社財產의 流出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의 減少는 會社財產을 유일한 担保로 하는 會社債權者의 利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商法은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반드시 債權者保護의 節次를 거치도록 定하고 있다. 즉 會社가 資本減少의 決議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2월 이상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내에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資本減少의 異議가 있으면 異議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商法 第 439 條 2 항). 알고 있는 債權者란, 債權者가 누구인가, 그 債權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가 등에 관하여 대체로 會社가 알고 있는 債權者로서, 會社가 債權의 存在를 다투고 있어라도 이를 會社가 알고 있는 債權者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金錢債權과 같이 債權의 敷額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債權의 履行期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會社債權者が 이 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資本減少를 承認한 것으로 보며(商法 第 439 條 2 항, 제 232 조 2 항) 또한 會社債權者が 이 期間內에 異議를 제출한 경우에는 會社는 그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會社債權者에게 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상당한 財產을 信託會社에 信託하여야 한다(商法 第 439 條 2 항, 제 232 조 3 항). 그리고 社債의 性質上 異議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고 社債權者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에 法院은 利害關係人の 請求에 의하여 社債權者를 위하여 異議提出의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商法 第 439 조 3 항).¹⁷⁾

(3) 株式併合의 절차

株式的 併合에 따른 減資를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3월 이상의 일정한 期間内에 株券을 會社에 제출할 것을 公告하고 또 株主名簿에 기재된 株主와 質權者

에 대하여는 각별로 通知하여야 한다.(商法 第 440 條)¹⁸⁾ 그리고 株式併合에 따른 減資의 경우에는, 上記의 期間間豆후 第 232 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終了한 때에 効力이 생긴다.(商法 第 441 條).

3.3 減資의 種類

減資에는 實質的인 減資와 形式的인 減資의 두 가지 種類가 있다.

(1) 實質的 減資

實質的인 減資는 會社의 營業規模를 縮小하기 때문에 會社의 資本이 過大하게 되었을 때, 그 過剩된 資本을 整理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實質上의 減資라고도 부른다. 이 경우에는 減資와 同時に 過剩된 會社資產을 實質的으로 整理除去하기 때문에 會社는 株主에 대해서 그 株金의 一部를 返還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⁹⁾

實質的인 減資에는 株金의 返還에 의하는 경우와 株式의 消却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²⁰⁾

(2) 形式的 減資

形式의 減資는 名義上 또는 計算上의 減資라고도 하는데 이는 결손을 填補할为目的으로 減資를 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資本金의 一部가 實質上 이미 없어진 상태다.

마구어말하면, 會社의 營業成績이 不良하기 때문에 결손이 多額으로 되어, 종래의 資本金額으로는 配當을 行할 수가 없는 경우에 資本金額을 減少시키고 그것을 會社의 資產額과一致시킴과 동시에 결손을 填補해서 장래의 配當을 可能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의 減資는 단순히 計算的 또는 形式的 減資이고, 會社資產을 現實的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名義上의 감자라고 부른다. 다만 이 경우의 減資를 定款變更의 하나인 授權資本의 減少와 混同해서는 안된다.

會社에 多額의 缺損이 發生한 경우에, 準備金이 있으면 그것으로 填補하고, 아직 부족한 경우에는 減資를 해서 그 不足額을 填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새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社債 또는 新株를 發行할 수가 있다.

그리고 會社整理節次에서는 更生計劃中에서 減資를 決定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計劃이 認可되면 會社整理節次에 따라 減資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商法의 節次에 의할 必要가 없다.

18) 上揭書, p. 455.

19) 片岡泰彦, 前揭書, p. 10.

20) 金英晴, 會計理論(서울:博英社, 1983), p.591.

17) 裴鐵世·姜渭斗, 前揭書, p. 454.

株式會社가 財政上 困難에 처한 경우 前述한 것처럼 減資에 의해 資本金을 減少시켜 缺損을 填補해서 會社를 再建하는 方法이 있지만, 이 경우에 實質上의 減資는 現金의 流出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따라서 會社再建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形式上의 減資가 원용된다.²¹⁾

3·4 減資의 方法

減資의 方法에는 株式數를 減少하는 경우, 株金額을 減少하는 경우 및 兩者를 併用하는 경우의 3種이 있다.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에 共通한 方法은 株式數를 減少하는 것이고, 株金額의 減少에 의한 方法은 無額面株式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²²⁾

(1) 株金額을 減少하는 경우

株金額을 減少하는 方法은 額面株式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있지만, 그것에는 몇 가지의 制限이 뒤따른다.

額面株式的 株金額은 均一하고 1株의 金額은 5,000원 以上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²³⁾ (商法 第329條 4項) 株金額이 5千원 以上 되지 않으면 이 方法에 의한 減資를 행할 수 없다. 또한 株金額의 減少는 各株主에게 平等하게, 또한 均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方法은 株式數는 종래대로 두고 1株의 金額을 減少시키는 경우이다. 예를들면 10萬원의 株를 5萬원의 株로 變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이 實際로 適用되는 경우는 比較的 적다. 그리고 이 方法은 株金額의 還給과 株金額의 切棄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²⁴⁾

(1) 株金額의 還給

株金額의 還給이라면, 減資를 해서 拘束을 解除한 金額을 持株數에 對應시켜서 現實의으로 株主에게 還給하는 方法이다. 예를들면 10萬원을 납입한 株式에 대하여 5萬원을 還給하고, 5萬원株를 變更해서 과잉된 資本을 減少시킬 수 있다. 이 方法은 會社의 財產이 現實의으로 감소됨과 동시에 會社의 債權者를 害하는 까닭에 實質의 減資의 方法으로만 인정되어 진다. 더구나 減資額이 株主에게 還金된 金額을 超過할 때는, 그 超過額(減資差益)은 資本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商法 第459條 2句)²⁵⁾

21) 片岡泰彦, 前掲書, p. 11

22) 上掲書, p. 11 ~ 12.

23) 孫珠瓚의 4人, 改正商法解說(서울:三英社, 1984), p. 45.

24) 裴鐵世·姜渭斗, 前掲書, p. 452.

25) 孫珠瓚의 4人, 前掲書, p. 160.

減資 그 자체는 定款의 變更을 必要로 하지 않지만, 一株의 金額의 減少는 定款의 變更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定款變更를 위한 株主總會의 特別決議가 必要하다.

(2) 株金의 切棄

株金額의 切棄란 額面株式의 券面額의 一部를 株主의 損失(損失)으로 單純히 切棄해서, 殘額만을 새로운 券面額으로 하는 方法으로서 缺損의 填補를 目的으로 하는 計算的 또는 形式上의 減資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예를들면 10萬원을 完納한 株式을 5萬원을 切棄해서 5萬원의 株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2) 株式數를 減少하는 경우

이 方法은 株金額을 分래 그대로 두고, 株式數를 減少해서 減資하는 경우로서, 株式의 消却과 株式을 併合하는 方法이 있다.

(1) 株式의 消却

株式의 消却이라는 것은, 會社가 特定한 自己株式을 取得해서 消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自己株式取得禁止의例外規定으로 定해진 것이다(商法 第341條 1項).

株式의 消却은 資本減少의 規定을 따라야 하지만, 定款의 規定에 根據해서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을 가지고 株式을 消却하는 경우는 資本減少의 規定에 따를 必要가 없다(商法 第343條). 왜냐하면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을 가지고 株式을 消却할 때는 一般的으로 債權者の 權利를 침해하는 일이 없으며 또한 주주의 利益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株式消却이 減資의 規定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減資의 効果가 發生하지만, 株式消却이 減資의 規定에 따라서 行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減資의 効果가 發生하는지 어떤지는 學說이 여러갈래로 나누어진다.

減資의 規定에 따르지 않고서 株式消却을 行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債權者保護의 節次를 取하지 않고 債權者の 權利를 침해 할 우려가 있지만 事實上 株式會社의 資本金額을 減少시키기 때문에, 減資의 効果가 發生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²⁶⁾

株式消却의 効果로서는 發行된 株式의 消減을 發生시키지만, 當然히 授權資本 즉 會社가 發行해야 할 株式總數의 減少를 發生시키지 않는다. 株式消却의 方法으로는 強制消却과 任意消却 및 有償消却과 無償消却이 있다.

(2) 強制消却과 任意消却

強制消却이라는 것은 株主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會社가 주권 또는 比例해서 株主의 所有株式을 取得

26) 片岡泰彦, 前掲書, p. 13.

해서 消却하는 경우이다. 任意消却이라는 것은 會社와 株主 사이의 任意契約에 따라 株式을 取得해서 消却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會社와 株主와의 買賣契約에 따라 행해진다.

① 有償消却과 無償消却

強制消却이거나 任意消却이거나를 불문하고 有償消却是 對價를 支拂한 경우이고(買入消却) 無償消却是 對價의 支拂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말을 바꾸면 無償消却의 경우에는 會社의 資產이 實質의 으로 減少하지 않지만, 有償消却의 경우에는 會社의 資產이 實質의 으로 減少한다. 그런 까닭에 有償消却是 實質上의 減資의 경우에 행해지고 無償消却是 形式上의 減資의 경우에 採用되어 지는 것이 原則이다.

有償消却의 경우에 있어서, 그 財源이 株主에서 配當할 수 있는 利益이 있는 경우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前者は 通常의 으로 一定期間后에 企業의 經濟的價值가 消滅하는 경우인데, 소위 解散后 清算節次를 간단히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후자는 資本減少의 手段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商法의 資本減少의 規定에 따라서 株主保護를 위한 特別決議를 必要로 하고, 또한 會社債權者保護를 위한 節次를 必要로 한다(商法 第438條～439條).

株式의 消却 特히 有償消却에 의한 減資는 實質上의 減資의 경우에 適用되는 것이 原則인 까닭에, 만일 이것을 形式上의 減資에 適用할 때는, 그 取得價額이 額面金額以下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發生하는 減資額은 缺損의 填補 및 資本準備金으로 충당하여야 한다.²⁷⁾

② 株式의 併合

株式의 併合이라는 것은, 同一한 株主에게 屬하는 數個의 株式을 合해서, 보다 적은수의 株式으로 하는 方法이다. 예를들면 5萬원株 2株를 合해서 5만원株 1株로 하거나 10만원株 5株를 10만원株 3株로 하는 경우이다. 株式의 併合에 있어서 併合에 적합하지 않는 部分 즉 端株가 發生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5株를 3株로 併合하는 경우에 8株를 가지고 있는 株主에 對해서는 5株에 對한 3株의 端株가 나타난다. 이 端株에 대해서는 그 部分에 대하여 發行한 新株를 競賣하여 從前의 株主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所의 時勢 있는 株式은 去來所를 통하여 賣却하고, 去來所의 時勢 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競賣의 方法으로 賣却할 수 있다(商法 第443條).

無額面株式에 대해서는 券面額이 없기 때문에, 減資方法으로서는 株式數를 減少하는 以外에는 方法이 없다. 그런 까닭에 이 경우에는 資本金을 必要額만

27) 上揭書, p. 14.

減少하고 그 減少된 金額을 持株數에 對應시켜서 각각의 株主에게 返還하고 또한 缺損의 填補에 충당하게 된다.

額面株式이건 無額面株式이건 불문하고, 株式數 즉 發行이 完了된 株式總數의 減少에 의한 減資는 定款의 變更을 수반하지 않고, 또한 授權株式數의 變更내지 擴大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發行이 完了된 株式數의 減少結果, 그 殘存株式數가 授權株式數의 4分의 1以下로 減少해도 지장이 없다.²⁸⁾

(3) 株金額과 株式數를 減少하지 않는 경우

無額面株式에 대해서는, 株金額(額面金額)의 減少라는 方法은 없고 株式數의 減少에 따라서만 減資가 行해진다. 더우기 株式數의 減少라는 方法을 取하지 않고도 資本을 減少시킬 수 있고 또한 株式數의 減少에 따라서 그 減少額을 對應시킬 필요도 없다고 解析되고 있다. 왜냐하면 無額面株式을 資本과 株式의 關係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無額面株式에 대해서는 株式數 및 株金額의 減少를 수반하지 않는 減資의 途行이 認定되어 지는데 異論이 없다. 그러나 額面株式에 대해서, 株式數도 株金額도 감소시키지 않고 資本을 減少시키는 것이可能한지 어ண지에 대해서는 學說上 見解가 갈라져 있다.

可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說은 額面株式도 無額面株式과 마찬가지로, 資本과 株式의 關係는 없는 것으로 하고 資本을 減少시키는 데도 株金額 및 株式數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解析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可能하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說은 資本과 發行畢한 株式總額과의 不一致를 認定하는 것은 資本이 發行畢의 株金總額을 上回하는 경우만 있고 資本이 發行畢한 株金總額을 下回하는 경우는 認定하지 않는다고 解析하기 때문이다.

표 1.

實質上의 減資	株金의 還給	株金額의 減少	額面株式에 만 적용한 다.	10만원을 납 입한 株式 가 운데 5만원 을 株主에게 還給	會社再建에 는 不適當하 다.
	株金의 消却	株金額의 減少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 에適用한다	100株 가운 데 50株를 買 入消却한다.	

28) 上揭書, p. 15.

29) 上揭書, p. 16.

(貸邊) 土地	10,000,000
(〃) 株主	10,000,000
(〃) 自己株式	10,000,000
現金・預金	10,000,000

위의 記入에 根據하여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를 作成할 때는 表5와 같다.

⑤ 土地를 200 만원의 利益을 보고 賣却해서, 200株를 1株額面價額의 110%의 比率로 買入消却하다.

(借邊) 現金・預金	12,000,000
(〃) 自己株式	11,000,000
資本金	10,000,000
(〃) 剩餘金	1,000,000
(〃) 株式	11,000,000
(貸借) 土地	10,000,000
() 土地賣却益	2,000,000
(〃) 株主	11,000,000
(〃) 自己株式	11,000,000
(〃) 現金・預金	11,000,000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는 表6처럼 作成된다.

⑥ 土地를 200 만원의 損失을 보고 賣却해서 200株를 1株額面價額의 98%의 比率로 買入消却하다.

(借邊) 現金・預金	8,000,000
土地賣却損	2,000,000
(〃) 自己株式	9,000,000
(〃) 資本金	10,000,000
(〃) 株主	9,000,000
(貸邊) 土地	10,000,000
株主	9,000,000
自己株式	9,000,000
剩餘金	200,000
現金・預金	9,000,000

위의 記入에 根據해서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를 作成할 때는 表7과 같다.

表4. 貸借對照表

現金・預金	2,100,000
土地	10,000,000
기타資産	78,000,000
	90,100,000

表5. 貸借對照表³³⁾

現金・預金	2,100,000
기타資産	78,000,000
	80,100,000

33) 上揭書, p. 19.

表6. 貸借對照表

現金・預金	3,100,000
기타資産	78,000,000
	81,100,000
	81,100,000

表7. 貸借對照表

現金・預金	300,000
기타資産	78,000,000
	78,300,000
	78,300,000

(2) 形式的인 減資의 경우³⁴⁾

① 株金의 切棄에 의한 경우

江口産業株式會社는 株主總會에서 表8의 貸借對照表를 基礎로 해서 다음의 要領으로 減資를 行하기로 決議했다.

⑦ 株式 600株(1株의 額面價額은 10 만원)에 대해서, 額面價額 10 만원의 반액인 5 만원을 切棄해서 資本금을 3,000 만원으로 減少한다.

⑧ 減資差益은 다음과 같이 處分한다.

- i) 缺損의 填補(未處理損失) 2,500 만원
- ii) 資本準備金의 積立 500 만원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分介가 행해진다.

(借邊) 資本金	30,000,000
(〃) 減資差益	30,000,000

(貸邊) 減資差益 30,000,000

未處理損失 25,000,000

資本準備金 5,000,000

위의 分介에 根據하여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는 表9와 같이 作成된다.

表8. 貸借對照表

諸資產	75,000,000
未處理損失	25,000,000
	100,000,000

表9. 貸借對照表

諸資產	75,000,000
	75,000,000

② 株式의 併合에 의하는 경우

江口産業株式會社는 表10의 貸借對照表를 基礎로 해서 다음과 같이 減資를 行하기로 決議했다.

⑦ 2 : 1의 比率로 株式을 併合해서 3,000 만원을

34) 上揭書, p. 20.

減資한다.

⑤ 株式的併合에 따라 發生하는 減資差益은 未處理損失을 填補하고, 殘額을 資本準備金으로 한다.

위의 去來를 分介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는 表11처럼 作成된다.

(借邊) 資本金	30,000,000
減資差益	30,000,000
(貸邊) 減資差益	30,000,000
未處理損失	25,000,000
資本準備金	5,000,000

表10. 貸借對照表

諸資產	75,000,000	諸負債	40,000,000
未處理損失	25,000,000	資本金	60,000,000
			100,000,000

表11. 貸借對照表

諸資產	75,000,000	諸負債	40,000,000
		資本金	30,000,000
		資本準備金	5,000,000
			75,000,000

(3) 實質의 減資를 併用하는 경우³⁵⁾

第一產業株式會社는 表12의 貸借對照表를 基礎로 해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減資를 할 것을 決議했다.

⑦ 700株(1株의 額面價額 5만원)의 株式을 買入消却해서 資本金 6,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減少하다.

⑧ 株式的 買入은 去來銀行을 通해서 행한다. (단, 株式的 買入價額을 額面價額의 20%로 한다.)

⑨ 株式的 買入消却에 따라 發生하는 差益 2,800만원을 다음과 같이 處分한다.

i) 未處理損失의 填補 2,500만원

ii) 資本準備金의 積立 300만원

위의 去來는 다음과 같이 分介된다.

(借邊) 自己株式 7,000,000

(〃) 資本金 35,000,000

(〃) 減資差益 28,000,000

(貸邊) 現金·預金 7,000,000

(〃) 自己株式 7,000,000

減資差益 28,000,000

(〃) 未處理損失 25,000,000

資本準備金 3,000,000

위의 分介에 根據하여 減資后的 貸借對照表를 作成할 때는 表13과 같다.

35) 上揭書, p. 21.

表12. 貸借對照表

諸資產	85,000,000	諸負債	50,000,000
未處理損失	25,000,000	資本金	60,000,000
			110,000,000

表13. 貸借對照表

諸資產	78,000,000	諸負債	50,000,000
		資本金	25,000,000
		資本準備金	3,000,000

3·7 減資貸借對照表

(1) 株主 및 債權者保護를 위한 減資貸借對照表 現行商法은 株式會社가 減資의 決議를 한 때에는 2주내로 財產目錄 및 貸借對照表의 作成을 要求하고 있다(商法 第231條). 그것의 作成目的은 減資에 따라서 直接·間接으로 會社의 株主 및 債權者の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保護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財產目錄 및 貸借對照表는 減資 實施前, 會社의 財產狀態와 營業成績을 債權者에게 알려서, 減資에 對해 反對해야 할지 어떤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材料를 提供하는 것이다.³⁶⁾ 그러나 實際로는 이러한 書類의 作成은 別意味가 없기 때문에 改正商法에서는 消除해버렸다.

4. 結論

會社에 純損失이 繼續적으로 發生하여 缺損이 누적되면 會社는 倒産하게 된다. 會社가 倒産하게 되면 남은 길은 解散과 清算箭次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會社가 資本額에 상당하는 財產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때에는(즉, 資本이 充實하지 못한 때) 解散을 하더라도 債權者와 기타 利害關係者の 利益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會社의 解散만이 最善의 方法은 아님 것이다. 오히려 財務的 要因에 의하여 倒産에 직면하였으나 回生의 可望이 있는 會社는 更生을 시킴으로써 企業을 維持시키고 會社債權者와 株主 기타 利害關係人の 利益을 보호할 수 있는 制度가 要請되는데³⁷⁾ 美國의 破産法上의 會社更生制度(corporate reorganization)나 準更生(quasi reorganization)³⁸⁾ 우리나라의 株式會社整理法, 또는

37) 李芳遠, 中級會計(서울:貿易經營社, 1982), p. 429 ~ 430.

38)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3/e (John Wiley & Sons, Inc., 1980), p. 711.

日本의 會社更生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會社를 更生 혹은 再建시킬 수 있는諸制度中에서 本稿는 減資를 中心으로 하는 會計制度를 展開했다. 減資에는 實質的인 減資와 形式的인 減資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形式的인 減資만이 會社를 再建시킬 수 있는 적합한 方法임을 論했다. 차후에 會社를 再建시킬 수 있는 其他의 方法에 대해서 論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 1) 金英晴, 會計理論, 서울:博英社, 1983.
- 2) 裴鐵世·姜渭斗, 商法講義(II), 서울, 螢雪出版社, 1982.
- 3) 徐燉玆, 商法講義(上), 서울, 1981.
- 4) 孫珠讚 외 4人, 改正商法解說, 서울, 三英社, 1981.
- 5) 李芳遠, 中級會計, 서울, 貿易經營社, 1982.
- 6) 李範燦, 商法講義, 서울, 國民書館, 1981.
- 7)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서울, 經文社, 1981.
- 8) 鄭熙詰, 商法學原論(上), 서울, 博英社, 1982.
- 9) 趙相元, 法典, 서울, 玄岩社, 1984.
- 10) 大隅健一郎, 全訂會社法論(上), 東京: 有斐閣, 1954.
- 11) 片岡泰彦, 會社再建會計, 東京, 中央經濟社, 1983.
- 12)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3/e, N.Y.: John Wiley & Sons, Inc., 1980.